

대금청구와 징수 정책 BILLING AND COLLECTION POLICY

I. 목적

이 정책의 목적은 Beaumont Health 환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병원비 대금청구와 징수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책"). 또한 이 정책은 Beaumont Health 재정 지원 정책(Financial Assistance Policy - "FAP")에 의거하여 환자가 재정 지원 자격이 있는지(아래 참조)를 판단하기 위해 Beaumont Health 직원이 취해야 하는 필수적인 합당한 노력을 포함하여 이러한 징수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절차와 시한도 명시합니다. 이 정책은 개정본 1986 미국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의 섹션 501(r)에 의거하여 부과된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501(r)(6)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II. 정의

A.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Beaumont Hospital이 수령한 FAP에 규정된 바에 따라 Beaumont Health가 환자 재정 지원 신청서("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해야 하는 기간으로 정의됩니다. 신청 기간은 환자가 치료를 받는 첫날에 시작하여 Beaumont Health가 치료에 대한 최초 대금청구서를 환자에게 발송한 후 240일째에 종료합니다.

B. 특별 징수 조치 ("ECA"): ECA는 FAP에서 다루는 항목이나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 대금 징수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Beaumont Health가 취할 수 있는 조치로서 법적 절차, 혹은 개인 부채를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개인에 관한 불리한 정보를 소비자 신용 보고 기관이나 신용 평가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정책의 목적을 위해 Beaumont Health 또는 그 적절한 대리인은 대금을 징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필요로 하는 (1) 유치권 설정, (2) 부동산 압류, (3) 은행계좌나 기타 개인 재산의 점유, (4) 개인에 대한 민법 조치 개시, (5) 개인에 대한 체포를 유발하는 조치, (6) 구속영장 발부를 유발하는 조치, 그리고 (7) 봉급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C. 고지 기간 고지 기간은 환자에게 FAP를 알리기 위해 Beaumont Health가 합당한 노력(아래 정의 참조)을 기울여야 하는 기간으로 정의됩니다. 고지 기간은 환자가 치료를 받는 첫 날에 시작하여 Beaumont Health가 최초 대금청구서를 환자에게 발송한 후 120일째에 종료합니다.

D. 합당한 노력: 합당한 노력이란 Beaumont Health가 (i) 환자에게 FAP에 대해 쉬운 말로 설명한 요약본을 전달하고 신청서를 제공함으로써 FAP에 대해 고지하는 것, (ii) 치료에 관한 모든 대금청구서(120일 초과 최소 3일) 및 고지 기간 동안 환자에게 제공된 청구서 관련한 모든 그 외 서면 전달사항과 더불어 FAP에 대한 평이한 언어 요약본을 동봉하는 것, (iii) 고지 기간 동안 발생한 치료에 대한 대금 관련하여 구두 전달 시 환자에게 FAP에 대해 알려주는 것, 그리고 (iv)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했거나 서면 고지서에 명시된 마감일(고지 기간 최종일 이후)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취할 수 있는 것으로서 환자에게 ECA에 대해 알려주는 서면 고지서를 한 번 이상 발송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서면 고지서는 명시된 마감일 30일 이상 전에 환자에게 발송되어야 함)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가로 합당한 노력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는 각각의 특정한 상황에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구사항도 포함합니다.

신청서 미제출 시. 환자가 고지 기간 동안 (혹은 이후인 경우 신청 기간 종료 때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합당한 노력은 전술한 (i) ~ (iv) 항목과 같이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 (그리고 고지되었다는 것을 문서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신청서를 수령했지만 완전하지 않은 경우. 합당한 노력이란 Beaumont Health가 (a) 환자에 대해 모든 ECA를 중단하는 것, (b) 어떤 추가 정보나 서류가 필요한지를 설명한 서면 고지서를 FAP에 대한 쉬운 표현으로 작성한 요약본과 함께 발송하는 것, 그리고 (c) (1) 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작성 마감일(신청 기간 최종일 또는 Beaumont Health가 환자에게 서면 고지서를 발송한 후 30일 중 더 늦은 일자 이후)까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Beaumont Health나 기타 적절한 당사자가 개시하거나 재개할 수도 있는 ECA를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 그리고 (2) 작성 마감일 30일 이상 전에 환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에 대한 서면 고지서를 한 번 이상 발송하는 것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Beaumont Health가 재정 지원에 적합한 환자라고 결정하는 경우. 합당한 노력이란 Beaumont Health가 (a) 재정 지원 금액을 차감한 후 남아 있는 대금을 명시한 대금청구서를 환자에게 발송하는 것, (b) 환자가 대금을 납부한 경우 잉여 지급분을 환불하는 것, 그리고 (c) 환자에게 취했던 모든 ECA(부채 매각은 제외)를 되돌리기 위해 가용할 수 있는 합당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III. 대금청구와 징수 절차

- A. **환자에 대한 고지** 환자 및/혹은 가족과 주고 받는 모든 서신에는 전화를 통해 이들이 계정이나 대금청구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Beaumont Health는 고지 기간 동안 발생한 대금에 관해 구두 전달 시마다 재정 지원 활용 가능성에 대해 환자 및/혹은 가족에게 고지합니다.
- B. **제한적인 ECA 활용.** ECA 활용은 합당한 노력을 기울여 환자가 FAP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합니다.
- C. **내부 징수 조치.** Beaumont Health는 이 정책에 의거하여 환자와 관련한 정상 대금청구와 징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환자가 식별한 보험사에 대금을 청구하는 것. (2) 보험사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잔여분은 환자에게 청구합니다. (3) 환자에게 이루어지는 최초 청구에는 (i)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만큼 총 부담금 상쇄 또는 환자가 미보험 가입자이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FAP에 명시되어 있는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금액(AGB), (ii) 환자가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재정 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환자에게 고지하는 것으로서 읽기 쉬운 폰트와 쉬운 표현으로 작성한 서면 고지서(FAP 사본을 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나 웹사이트 및 FAP에 대한 쉬운 표현으로 작성한 요약 동봉), 그리고 (iii) 환자가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경우 Beaumont Health는 현금, 비자, 마스터카드, 디스커버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및 개인 체크카드를 비롯한 다양한 지불 수단을 수용한다는 사실이 포함됩니다. 추가 지급 옵션은 개인 여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조율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서비스 위치에 따라 고객 서비스 대리인에게 연락하십시오.

Beaumont 병원 Grosse Pointe, Beaumont 병원 Royal Oak, Beaumont 병원 Troy, Beaumont 병원 Farmington Hills: 1 (248)-577-9600

Beaumont

Beaumont 병원 Dearborn, Beaumont 병원 Wayne, Beaumont 병원 Taylor, Beaumont 병원 Trenton: 1 (800)-858-9503

- D. **외부 징수 기관 활용.** Beaumont Health는 고지 기간 종료 때까지 환자 계정을 징수기관에 위탁하지 않습니다. 고지 기간 이후 환자 잔고가 미납부 상태로 남는 경우 그 계정을 징수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단 Beaumont Health와 징수기관 간 계약 조건으로서 징수기관은 FAP와 이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한 계약은 징수기관이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환자와 그 가족에게 접근하도록 규정합니다. 환자가 신청 기간 중에 완성된 상태인지와 상관없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징수기관은 환자에 대한 모든 ECA를 즉각 중단합니다.
- E. **담당 부서** 환자 재정 서비스부("부서")는 환자가 FAP에 적합한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당한 노력이 이루어졌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최종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이 부서는 재정 지원 요청 및 신청과 관련한 기록 보관도 담당합니다. 징수기관에게 계정을 넘기기 전에 이 부서는 재정 지원에 대한 환자의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합당한 노력이 이루어졌다고 결정해야 하며, 또한 재정 지원 적격성에 관해 환자에게 고지한 사본을 보관할 것입니다.
- F. **그 외 대금청구 및 징수 정책 기각.** Beaumont Health의 다른 정책이나 정책 일부가 이 정책 및/또는 미국 내국세입법의 섹션 501(r) 및 그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이 정책 및/또는 섹션501(r)이 우선합니다.
- G. **정책의 광범위한 전파.** Beaumont Health는 법령의 섹션 501(r)과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 대중이 이 정책과 FAP 사본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H. **재정 지원 정책과의 조율.** 이 정책은 항상 FAP뿐만 아니라 법령의 섹션 501(r)과 규정에 따라 해석해야 합니다.